



2022년 (국고)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 공모 FAQ

2022. 2. 15.(화) / 2022. 2. 23.(수) 추가

* 사업설명회(2.21) 이후 추가 내용 '파란색 글씨' 작성

- 신청자격 p1-3
- 사업내용 p4-6
- 사업예산 p6-8
- 지원신청서(별도 양식) p9-1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p10-11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신청 자격	공통	<p>[신청자격] Q. 개인/단체구분별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A.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신청주체 구분</th> <th colspan="4">지원신청 가능 여부 (NCAS 신청대상)</th> </tr> <tr> <th colspan="2">* NCAS 신청대상(ID) 기준</th> <th>콘텐츠 창작(진입)</th> <th>콘텐츠 창작(성장)</th> <th>확산 서비스(매개)</th> <th>확산 서비스(수익)</th> </tr> </thead> <tbody> <tr> <td>개인</td> <td>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td> <td>○</td> <td>○</td> <td>○</td> <td>X</td> </tr> <tr> <td rowspan="4">단체</td> <td>민간 단체·기관·기업</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국립 단체·기관·기업</td> <td rowspan="3">X</td> <td rowspan="3">X</td> <td rowspan="3">X</td> <td rowspan="3">X</td> </tr> <tr> <td>공립(시·도·군) 단체·기관·기업</td> </tr> <tr> <td>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td> </tr> </tbody> </table>	신청주체 구분		지원신청 가능 여부 (NCAS 신청대상)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개인	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	○	○	○	X	단체	민간 단체·기관·기업	○	○	○	○	국립 단체·기관·기업	X	X	X	X	공립(시·도·군) 단체·기관·기업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신청주체 구분		지원신청 가능 여부 (NCAS 신청대상)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개인	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	○	○	○	X																												
단체	민간 단체·기관·기업	○	○	○	○																												
	국립 단체·기관·기업	X	X	X	X																												
	공립(시·도·군) 단체·기관·기업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p>[해외 예술인의 지원신청 혹은 사업참여 자격] Q. 해외 거주 중인 예술인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①국내 거주 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②결과발표 시점(5월 2주 예정)까지 실물 OTP 발급가능으로 선정 직후 교부신청이 가능한 자(2가지 모두 충족)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위 2가지 조건 외에 ③신청접수마감일(3.14.월 18:00) 기준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이 확인된 자(3가지 모두 충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창구를 통한 발급 가능 여부 및 일정 확인 필요 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아닌 공동참여자·단체·기업 및 그 외 단순 참여 인력인 경우, 해외 예술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 증명' 불필요)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3	<p>[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동일인·단체 기준 여러 사업 신청 관련]</p> <p>Q. '개인'과 '단체(개인명과 단체 대표자명이 동일)'로 각각 다른 유형에 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여러 개 사업유형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유형 중, 택1하여 지원 가능)</p> <p>* 신청 불가/가능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자가 '단체'로 1개 사업을 신청하고, 또 다른 사업유형에 '개인'으로 신청 ⇒ 신청 불가, 2개 사업 모두 행정 결격 ·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가 '단체'로 1개 사업을 신청하고, 대표자가 동일하나 다른 명의의 '단체'로 또 다른 사업유형에 신청 ⇒ 신청 불가, 2개 사업 모두 행정 결격 · NCAS 신청주체가 아닌, 실연 등 단순 참여인력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사업유형(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과 관계없이 여러 사업에 참여 ⇒ 신청 가능
	4	<p>[3개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관련]</p> <p>Q. 동일인·단체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에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여러 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모든 것에 대한 보조금 수혜가 가능한가요?</p> <p>A. 다른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 동일인·단체라 하더라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에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선정되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 중복신청 및 수혜 불가)</p> <p>다만, 지원심의 기준 '수행역량(30%)'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원활히 수행하는 것(사업기간 및 규모 등 고려)이 가능할지 지원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5	<p>[중복 신청 관련]</p> <p>Q.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혹은 타 기관의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작품을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여 재제작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온라인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내용과 차별화된 사업목적 및 수행내용, 온라인 창작계획을 가진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작품을 온라인 환경에서 단순 재실현하거나 중계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는 지원불가합니다.</p> <p>아울러, 수혜 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 연계 타 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선정 이후, 관련기관 간 통합 점검 예정</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콘텐츠 창작	6	<p>[콘텐츠 창작(진입, 성장)]</p> <p>Q.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의 경우에도 신청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채널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요?</p> <p>A.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채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수행 완료 이전에 예술인·단체 보유의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구축 혹은 개설(상용 플랫폼 활용 및 자체 플랫폼 구축 관계 없음)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을 발표해야 합니다.</p>
	7	<p>[콘텐츠 창작(진입)]</p> <p>Q. 2021년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진입'유형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진입'유형에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020년에 지원받은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새로운 온라인 예술창작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한가요?</p> <p>A. 네, 과거연도 보조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진입'유형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제작된 콘텐츠를 단순 재구성·재편집 등이 아닌 발전적인 예술 기획을 통해 콘텐츠를 새롭게 창작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8	<p>[콘텐츠 창작(성장)]</p> <p>Q. '21년 콘텐츠 제작형(성장)과 동일하게 올해 콘텐츠 창작(성장)유형에도 사업수행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가요?</p> <p>A.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모두 이전 온라인 예술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확산 서비스	9	<p>[확산 서비스(매개, 수익)]</p> <p>Q.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술분야와 관계없는 단체(스타트업 등)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①예술을 주된 주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②공고일 이전에 구축 및 개설하여, ③공고일 기준 지난 1년간 해당 플랫폼·채널을 기반으로 활발한 예술 확산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별도양식의 활동 증빙자료 제출(필수)</p>
	10	<p>[확산 서비스(매개, 수익)]</p> <p>Q. 2020년 '플랫폼형'에 선정되어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보다 발전시켜 여러 기능 및 콘텐츠를 추가하는 프로젝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p> <p>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확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만 하는 프로젝트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2020년 '플랫폼형'과 비교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활동증빙 등이 상이하오니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1	<p>[확산 서비스(수익)]</p> <p>Q. 예술단체·기업만 신청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개인 자격이나, 지원신청 이후에 예술단체·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공모 신청접수 마감일(3.14.월 18:00)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인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지원 불가 사업인 확산 서비스(수익) 외에 확산 서비스(매개)와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의 경우, 개인이 대표자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 이전 변경이 가능합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사업 내용	12	<p>[적합한 사업 유형 선택]</p> <p>Q. 본 사업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SNS 등 상용 플랫폼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과 확산 서비스(매개)’ 중 어느 유형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가요?</p> <p>A.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온라인 예술창작 실험 및 발표 등 창작에 주안점을 둔 활동이라면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②기제작된 예술콘텐츠의 확산 활성화를 위한 비평·담론 형성·리뷰·대중화 등의 대국민 향유 확대 프로젝트라면 ‘확산 서비스(매개)’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3	<p>[최종 결과물 형식]</p> <p>Q. 사업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콘텐츠 제작 건수, 제작 분량 등이 정해져 있나요?</p> <p>A.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1건 혹은 여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규모, 내용에 맞추어 적합한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건수, 분량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14	<p>[최종 결과물 형식]</p> <p>Q. 본 사업의 제작물(콘텐츠 또는 확산 서비스)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p> <p>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온라인 예술향유 확대를 위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제작된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공개 개방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콘텐츠 창작	15	<p>[콘텐츠 창작(진입, 성장)]</p> <p>Q. 작년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 <p>A.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2021년(기존)</th> <th colspan="2">2022년(변경)</th> </tr> <tr> <th>콘텐츠 제작형(진입)</th> <th>콘텐츠 제작형(성장)</th> <th>콘텐츠 창작(진입)</th> <th>콘텐츠 창작(성장)</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자격</td> <td>온라인 예술활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단체 등</td> <td>온라인 예술활동 경험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며,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 등</td> <td colspan="2">별도 지원자격 구분 없음</td> </tr> <tr> <td>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td> <td>최대 1백만원 지원</td> <td>-</td> <td colspan="2">최대 1백만원 교육비 예산 편성 가능</td> </tr> <tr> <td>지원규모</td> <td>정액 지원 1천만원</td> <td>사업규모별 지원결정 1천만원~5천만원</td> <td>정액 지원 1천만원/2천만원 중, 택1</td> <td>정액 지원 3천만원/5천만원 중, 택1</td> </tr> </tbody> </table>	구분	2021년(기존)		2022년(변경)		콘텐츠 제작형(진입)	콘텐츠 제작형(성장)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신청자격	온라인 예술활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단체 등	온라인 예술활동 경험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며,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 등	별도 지원자격 구분 없음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	최대 1백만원 지원	-	최대 1백만원 교육비 예산 편성 가능		지원규모	정액 지원 1천만원	사업규모별 지원결정 1천만원~5천만원	정액 지원 1천만원/2천만원 중, 택1	정액 지원 3천만원/5천만원 중, 택1
구분	2021년(기존)			2022년(변경)																						
	콘텐츠 제작형(진입)	콘텐츠 제작형(성장)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신청자격	온라인 예술활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단체 등	온라인 예술활동 경험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며,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 등	별도 지원자격 구분 없음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	최대 1백만원 지원	-	최대 1백만원 교육비 예산 편성 가능																							
지원규모	정액 지원 1천만원	사업규모별 지원결정 1천만원~5천만원	정액 지원 1천만원/2천만원 중, 택1	정액 지원 3천만원/5천만원 중, 택1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16	<p>[콘텐츠 창작(진입, 성장)]</p> <p>Q.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에서도 상용 플랫폼 혹은 홈페이지 등 자체 플랫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의 경우, 자체 혹은 상용 플랫폼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창작 혹은 발표 매체로 예술인 자체 보유 온라인 플랫폼·채널(유튜브, 자체 구축 홈페이지, 앱 등)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결과물 발표 형식 : 1차) 선정자·단체의 온라인 채널(SNS, 홈페이지 등) 내 결과물 공개 업로드 → 2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내 작품 소개 및 온라인 채널 게시 링크 등록 등</p>																												
확산 서비스	17	<p>[확산 서비스(매개, 수익)]</p> <p>Q. '21년 지원유형이었던 플랫폼형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올해의 경우, 어떤 사업유형에 지원신청해야 할까요?</p> <p>A. 작년 '플랫폼형'은 '확산 서비스(수익)'유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자격 등 상당부분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의 프로젝트에 맞는 사업유형으로 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495 746 2089 1366"> <thead> <tr> <th data-bbox="495 746 835 810">구분</th> <th data-bbox="835 746 1218 810">2021년(기존)</th> <th colspan="2" data-bbox="1218 746 2089 810">2022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5 810 835 900">사업유형</td> <td data-bbox="835 810 1218 900">플랫폼형</td> <td data-bbox="1218 810 1653 900">확산 서비스(매개) * 유형 신설</td> <td data-bbox="1653 810 2089 900">확산 서비스(수익)</td> </tr> <tr> <td data-bbox="495 900 835 1027">목적</td> <td data-bbox="835 900 1218 1027">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향유 증대 및 수익화 방안 모색</td> <td data-bbox="1218 900 1653 1027">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향유 및 예술콘텐츠 확산 증대</td> <td data-bbox="1653 900 2089 1027">자체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콘텐츠 수익성 강화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td> </tr> <tr> <td data-bbox="495 1027 835 1110">신청 대상 및 자격</td> <td data-bbox="835 1027 1218 1110">예술인 및 단체·기업</td> <td data-bbox="1218 1027 1653 1110">예술인 및 단체·기업</td> <td data-bbox="1653 1027 2089 1110">예술단체·기업 * 개인지원 불가</td> </tr> <tr> <td data-bbox="495 1110 835 1238">신청가능 플랫폼</td> <td data-bbox="835 1110 1218 1238">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td> <td data-bbox="1218 1110 1653 1238">상용*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td> <td data-bbox="1653 1110 2089 1238">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td> </tr> <tr> <td data-bbox="495 1238 835 1310">플랫폼 신규 구축 가능 여부</td> <td data-bbox="835 1238 1218 1310">○</td> <td data-bbox="1218 1238 1653 1310">X</td> <td data-bbox="1653 1238 2089 1310">X</td> </tr> <tr> <td data-bbox="495 1310 835 1366">실적 증빙 제출</td> <td data-bbox="835 1310 1218 1366">X</td> <td colspan="2" data-bbox="1218 1310 2089 1366">○</td> </tr> </tbody> </table> <p>* 상용 플랫폼 기준 : 신청주체(단체·기업)가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한 것이 아닌, 유튜브·사운드클라우드·비메오·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 국내외 민간사업자가 개발·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p>	구분	2021년(기존)	2022년(변경)		사업유형	플랫폼형	확산 서비스(매개) * 유형 신설	확산 서비스(수익)	목적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향유 증대 및 수익화 방안 모색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향유 및 예술콘텐츠 확산 증대	자체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콘텐츠 수익성 강화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예술인 및 단체·기업	예술인 및 단체·기업	예술단체·기업 * 개인지원 불가	신청가능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상용*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플랫폼 신규 구축 가능 여부	○	X	X	실적 증빙 제출	X	○	
구분	2021년(기존)	2022년(변경)																												
사업유형	플랫폼형	확산 서비스(매개) * 유형 신설	확산 서비스(수익)																											
목적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향유 증대 및 수익화 방안 모색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향유 및 예술콘텐츠 확산 증대	자체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콘텐츠 수익성 강화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예술인 및 단체·기업	예술인 및 단체·기업	예술단체·기업 * 개인지원 불가																											
신청가능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상용*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플랫폼 신규 구축 가능 여부	○	X	X																											
실적 증빙 제출	X	○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18	<p>[확산 서비스(매개)]</p> <p>Q. 현재 상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여 확산 서비스를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 서비스를 수행하는 플랫폼을 향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신규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변경 및 예산 편성 모두 불가합니다.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확산 서비스 활동을 증빙한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기반으로 한 확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플랫폼의 신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기에 신규 플랫폼 구축 비용 관련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p>
	19	<p>[확산 서비스(매개)]</p> <p>Q. 확산 서비스(매개) 유형에서도 매개 및 향유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신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가요?</p> <p>A. 기창작된 온라인 예술콘텐츠를 새로운 기획을 통해 시장맞춤형으로 제작 확산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예술창작 및 발표 목적의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 창작형으로 지원) 대국민의 온라인 예술 향유 진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술가치 확산 목적의 시장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이주의 온라인 예술 소개, 주제별 온라인 예술콘텐츠에 대한 비평,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창작가-향유자 참여형 대담 등</p>
	20	<p>[확산 서비스(수익)]</p> <p>Q. '확산 서비스(수익)'는 무엇인가요? 꼭 사업기간 내 수익을 내야 하나요?</p> <p>A. 사업기간 내 수익을 내지 않아도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본 유형은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 생태계 구축 및 온라인 예술활동 환경의 발전을 위해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예술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들의 콘텐츠 확산 및 유통 측면에서 예술인들에게 정당한 콘텐츠 수수료 지급 등의 대가 체계를 갖추고 함께 온라인 예술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많은 플랫폼 사업자(운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p>
사업예산	21	<p>[사업비 편성]</p> <p>Q. 정액지원규모에 맞는 사업수행이 어렵습니다. 지원결정액 중 일부만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 본 사업은 사업의 취지 및 유형별 지원규모에 맞추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 선정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편성에 주의하여 지원규모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신청시 작성해주신 자부담율은 선정 이후에도 준수해야 하며 임의적인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합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22	<p>[자부담]</p> <p>Q. 공고문에 나와있는 자부담 작성예시 금액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해도 되나요? 또한 지원신청 시 작성한 자부담은 선정 이후, 모두 그리고 한꺼번에 집행해야 하나요?</p> <p>A. 네, 예시로 작성된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기 위한 최소금액으로, 작성예시 금액 이상의 자부담 편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따라 편성한 자부담은 모두 소진해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자부담 분할 집행이 가능합니다.</p> <p>*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지원신청 시 작성해주신 자부담율은 선정 이후에도 준수해야 하오니(변경 불가)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p>										
	23	<p>[자부담]</p> <p>Q. 자부담 시, 현물 자부담도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p>										
	24	<p>[인건비]</p> <p>Q. 인건비 편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p> <p>A. 반드시 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내 20%로 인건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은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모두 해당) 참여율을 부풀려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 및 지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오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고용형태별 예산 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504 1077 2089 1273"> <thead> <tr> <th>보조비목</th> <th>보조세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인건비</td> <td>보수</td> <td>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td> </tr> <tr> <td>상용임금</td> <td>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td> </tr> <tr> <td>일용임금</td> <td>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td> </tr> </tbody> </table>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										
	25	<p>[인건비]</p> <p>Q. 본 사업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어떠한 집행내용을 말하나요?</p> <p>A. 단체·기업 소속 기존 또는 신입 정규·계약(무기, 단기) 직원이 본 프로젝트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함에 대한 대가 지급을 말합니다. (인건비 편성 관련기준은 본 사항에만 해당) * 개인 신청주체는 해당사항 없음</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 소속 직원 외 사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사례비는 '운영비-일반수용비-사례비'로 편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26	<p>[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사례비]</p> <p>Q. 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비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창작활동 사례비(기획, 연출 등) 책정 가능합니다.(인건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사례비 편성) 단, 프로젝트 참여역할 및 참여율, 총사업비 내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 편성 시,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지원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7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성 물품이 무엇인가요?</p> <p>A. 사업 이후로도 신청주체의 자산이 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외장하드, 카메라, 책상, 의자 등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차를 통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8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사례비 지급에 수반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시 '사업자부담분'도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가능합니다. '운영비-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p>
	29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부가가치세(부가세)도 국고보조금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과세사업자인 경우, 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부가세액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주셔야 합니다.</p> <p>* 단체(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p> <p>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30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사업수행주체의 상주 및 정기적인 연습 등을 위해 사무실, 상주연습실 등 공간을 임차하는 부분도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운영비 성격의 집행항목은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직접 경비로 단기간·일회성·다회성으로 공연장, 연습실을 명확한 명목으로 단기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전세/월세 등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공간을 임차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지원신청서 작성 (별도양식)	31	<p>Q. 지원신청서 양식에 p1-2 안내문은 삭제해도 되나요? A. 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p>
	32	<p>Q. 지원신청서 상 파란색 글씨와 각 신청유형에 해당사항 없는 내용은 삭제해도 되나요? A. 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p>
	33	<p>Q. p1 '사업개요'에서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개인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p>
	34	<p>Q. '참여인력'의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프로젝트 추진 시,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담인력(주 참여인력) : 기획, 행정, 제작, 개발, 연구, 홍보 등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전담인력(수행역할의 중요도 혹은 기여도 20% 미만인 비정기적 참여인력) : 보조스태프, 자문인력 등 확정인 경우 참여 자명을 미정인 경우에는 역할별 인원을 작성하여 주십시오.</p>
	35	<p>Q. 주 콘텐츠와 부속 콘텐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속 콘텐츠를 반드시 제작해야 하나요? A. 주/부속 콘텐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만 부속 콘텐츠를 제작하면 됩니다. - 주 콘텐츠 : 본 사업의 목적 등에 부합하게 온라인미디어를 예술 창작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 부속 콘텐츠 :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메이킹 필름, 참여자 인터뷰 영상 등 주된 콘텐츠를 보완하는 부가 콘텐츠 등</p>
	36	<p>Q. 1개 작품 내에 주 콘텐츠와 부속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며, 이를 1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p4 '사업수행 결과물 총괄표'와 관련한 p5 '세부 사업 내용' 작성 표 관련 1개 표만 작성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 예 : 웹연극과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 시 혹은 온라인 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시, 신청인·단체가 주/부속으로 구분할 수 없어 2개 작품 모두를 주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경우 ⇒ 세부사업 2개로 판단하여, 2개 표에 각각 작성</p>
	37	<p>Q.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창작 및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신청 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신청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저작권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한 내 동의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 시에는 교부 이전까지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내용을 사업신청서상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주요 주제 및 소재가 되는 저작물의 변경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38	<p>Q. 활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p> <p>A.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센터(https://www.findcopyright.or.kr)에서 해당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상담 창구(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introduction/main-business/index.do)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등의 관련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p>																							
	39	<p>Q.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와 증빙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어떠한 활동을 작성하면 될까요?</p> <p>A. 콘텐츠 창작형(진입, 성장)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고,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 광고일 이전 플랫폼·채널 개설 및 플랫폼·채널 기반 예술확산 활동 필수 - 수행실적은 신청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존 온라인 예술활동 실적을 3건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오프라인 활동 등 사업과 연관 없는 활동 제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작성 및 1~2건 작성 가능 <p>* (작성 예시) '20년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이 외 최근 3년간 중 온라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타 기관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또는 선정단체·개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온라인 예술활동 등</p>																							
	40	<p>Q. 지원신청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어떤 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p> <p>A. 선택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전 활동 실적 등을 자유 형식(URL 링크 포함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파일인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p>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NCAS)	41	<p>Q.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 개인과 단체 아이디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요?</p> <p>A. 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프로젝트 주체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주체(개인/단체)는 향후 e나라도움 집행/정산 주체와 동일하오니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th> <th>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소지여부</th> <th>프로젝트 주체</th> <th>신청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개인</td> <td>예술인, 기획자</td> <td>X</td> <td>단체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td> <td>지원신청하는 본인의 <u>개인ID</u>로 신청</td> </tr> <tr> <td>프로젝트팀</td> <td>X</td> <td>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td> <td>프로젝트팀 참여 일원 중 가장 주된 역할 (대표)을 담당하는 이의 <u>개인ID</u>로 신청</td> </tr> <tr> <td rowspan="2">단체</td> <td>프로젝트팀</td> <td>O</td> <td>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td> <td>지원신청하는 해당 프로젝트팀(단체)의 <u>단체ID</u>로 신청</td> </tr> <tr> <td>예술단체·기업</td> <td>O</td> <td>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td> <td>지원신청하는 해당 단체의 <u>단체ID</u>로 신청</td> </tr> </tbody> </table>	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소지여부	프로젝트 주체	신청요령	개인	예술인, 기획자	X	단체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본인의 <u>개인ID</u> 로 신청	프로젝트팀	X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프로젝트팀 참여 일원 중 가장 주된 역할 (대표)을 담당하는 이의 <u>개인ID</u> 로 신청	단체	프로젝트팀	O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프로젝트팀(단체)의 <u>단체ID</u> 로 신청	예술단체·기업	O	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단체의 <u>단체ID</u> 로 신청
		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소지여부	프로젝트 주체	신청요령																			
		개인	예술인, 기획자	X	단체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본인의 <u>개인ID</u> 로 신청																			
프로젝트팀	X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프로젝트팀 참여 일원 중 가장 주된 역할 (대표)을 담당하는 이의 <u>개인ID</u> 로 신청																					
단체	프로젝트팀	O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프로젝트팀(단체)의 <u>단체ID</u> 로 신청																					
	예술단체·기업	O	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단체의 <u>단체ID</u> 로 신청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42	<p>Q.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유형명이 일부만 보입니다. 어느 유형인지 확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시스템 사용환경에 따라 일부 사업명이 잘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명' 탭을 오른쪽으로 확장하여(표 테두리에 나타나는 '⇄'를 늘림) 사업명 전체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43	<p>Q.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신청 전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p> <p>A. 본 사업 신청 전, 대표자를 반드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시고, ②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변경승인 완료된 이후에 지원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p>						
	44	<p>Q. 신청개요에 실 사업기간이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작성해야 하나요?</p> <p>A. 실 사업기간은 교부확정으로부터 콘텐츠·서비스 제작 및 발표완료 시점으로 '2022.5.3주 ~ 2022.11.30.' 이내에 계획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11.30.이후의 사업 수행(사업비 집행 포함)은 불가합니다.</p>						
	45	<p>Q. 온라인상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사업장소를 무엇으로 작성해야 할까요?</p> <p>A. 온라인 채널 주소 입력, 별도의 주 촬영 및 제작장소 등이 있으면 해당 장소를 입력하여 주십시오.</p>						
	46	<p>Q. 총 소요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작성해야 하나요?</p> <p>A. 총 사업비를 작성하는 란으로, '지원 결정액 + 선정자부담액(자부담액)'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47	<p>Q. 신청사업 세부분야와 신청사업 유형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p> <p>A. 신청자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부분야'와 '신청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시 '기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별도 양식의 '지원신청서'에 해당 사업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data-bbox="521 1123 1933 1374"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신청사업의 심의 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분야</td> <td style="padding: 5px;">시각예술</td> <td style="width: 30%; padding: 5px;">세부분야</td> <td style="padding: 5px;">영상(미디어아트포함)</td> </tr> </table> <h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신청사업 유형</td> <td style="padding: 5px;">전시</td> </tr> </table> </div>	분야	시각예술	세부분야	영상(미디어아트포함)	신청사업 유형	전시
분야	시각예술	세부분야	영상(미디어아트포함)					
신청사업 유형	전시							

○ 문의처

-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061-900-2237, 2235 / artchangeup@arko.or.kr
- 확산 서비스(매개) 061-900-2236, 2283 / artchangeup@arko.or.kr
- 확산 서비스(수익) 061-900-2237, 2283 / artchangeup@arko.or.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이용바랍니다.